지금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인가

박 홍 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 왜 이 글을 쓰는가?

글을 쓰는 기본형식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고, 그 기본원칙은 논리성과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만일 그 세 가지가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거나 통일되지 못하면 그 글은 엉터리다. 지금 자유를 둘러싼 대통령(나는 이 글에서 대통령의 자연인 이름을 부르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함자를 부르는 것이 대단한 불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직명인 대통령이라고 한다.)과 정부의 행태가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서론이나 총론으로는 자유를 수호한다고 거창하게, 그것도 빈번하게 주장하면서, 본론이나 각론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유의 반대가 억압, 강압, 탄압, 구속, 감금, 처벌, 엄벌, 배제, 지배 등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억압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표리부동,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이

다. 일관이 아니라 굴절이나 왜곡,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나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를 35회나 말한 2022년 5월의 취임사 이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줄기차게 자유를 외치지만, 2023년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가 축소되거나 이전과 같다고 답했고, 특히 언론자유가 가장 많이 축소되었다고 답한 것에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실제로도 대통령이 순방 때 이용하는 전용기에 특정 언론 취재진을 타지 못하게 하는 등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외신으로부터 '북한과 똑같다'고 지적받았다. 심지어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탑승 배제 이유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자유의 침해가 헌법 수호라는 것이다. 언론 자유의 보장이 헌법 수호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언론만이 아니라 야당이나 노조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 수호라고 한다. 그렇게 수호한다는 헌법은 대통령 임기 조항인가? 그것보다 더 먼저 헌법에 규정된 것이 국민의 자유 아닌가?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른 것인가?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적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법의 기본인 헌법에서는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부터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다. 이어 재산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유독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제3장의 국회에 이어 제4장 제1절에서 대통령을 규정하는 데, 최초 조항인 제66조 2항에서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하는데 대통령은 이 또한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 수호 대상인 헌법에는 당연히 국민의 자유가 포함되고, 헌법의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권리 수호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은 법률가다. 한국 최고라는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을 통과해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자유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검찰, 사법시험, 법과대학 등과는 무관한 국민은 자유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 의식을 비전문가의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도 있다. 이는 그가 국민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도 통하는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그 추종 세력에게는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에게 자유란 실질적 내용이 없는 멋진 추상물 같은 것이고, 그 실질적 내용은 자유시장이나 자유경제로 장식되는 자본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 조부모, 그 전부터 자유는 자유시장을 뜻했다. 자유나 자유민주주의란 그 자유시장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수식하는 말에 불과하다. 자유시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괴하는 적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산당이고 그 부종(不從)세력 내지 비판세력, 노동조합, 비판적 언론이나 학계 문화계도 포함된다. 그들은 범죄인으로 취급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가 대통령을 위시한 법관료들이다.

과거의 자유당은 그 실체가 반공당이었고 그 이름이 수십 번 바뀌어도 한국의 보수 정당은 여전히 반공당이고 한국의 보수 정치이념은 여전히 반공이다. 자유란 반공을 수식하는 말에 불과하다. 그것은 북한과의 갈등을 높이면서 야당과 진보세력, 특히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법률가들은 이를 잘 안다. 대부분의 법률가는 보수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반공의 이념법인 국가보안법이 항존한다. 어떤 '진보'정권도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진보가 아니라 단순히 '보수'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진보'라고 하는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자유'란 말처럼 '진보'도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촛불'이라는 혁명적 계기에 의해 수립된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역시 추상에 그치고 종래의 지배세력 추종에 급급하여 최소한의 개혁조차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무능

했다. 그래서 다시 반공당이 등장했다. 그들에게 자유란 반공이라는 말의 야만성을 덮기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 자유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말만을 하면 구체성을 갖기 힘들다. 그러나 그 말이 구체적 사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허구임이 폭로된다. 그러나 그 폭로가 쉽게 법으로 미화되고 언제나 다시금 자유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말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추상적이었고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옹호였다. 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강조되었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신임 총장이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 등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여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중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나는 ‘진보’라는 정부가 자신들과 반대인 그런 사람을 왜 검찰총장에 임명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당시 정부에는 프리드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없었단 말인가? 당시 대통령은 까딱하면 독서 운운하면서 그들의 책을 읽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그 흔해 빠진 인터넷만 쳐보아도 프리드먼 등이 신자유주의 보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니면 신자유주의라서 안심했다는 것인가? 지난 ‘진보’ 정권들이 모두 신자유주의라서 동지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 수준이라도 프리드먼 이데올로기의 열렬한 숭배자가 칠레의 군사 파시스트인 피노체트 장군을 비롯한 독재자들, 학살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피노체트가 누군가? 마르크스주의가 파괴적이고 위선적이며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도덕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당위로 칠레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그를 자신들의 ‘진보’ 성향과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 무능이 아니라 바보천치들이 아닌가? 명색이 ‘진보’라는 자들이 ‘자유’로 변장한 ‘보수’ 대통령을 앞

장서서 만들어주었다. ‘촛불’로 집권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에게 권력을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우리 정치사에 이런 희극이 또 있을까? 나는 다시는 이런 희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2. 대통령의 자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하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그 지겨운 취임사를 다시 정독했지만, 그렇게도 내용이 없는 글인 줄이라는 점은 이번에 다시 새삼 통감했다. 대통령 자신이 쓰지 않고, 누군가가 대필했다고 해도 그렇게도 내용이 없다니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론 그 취임사에 감격해 자유 찬가를 부른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너무나 부끄럽다.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다시 없다.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2019년 그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답변서에서 그는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1980년에 밀턴 프리드먼과 로즈 프리드먼 부부가 함께 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유’이고 그것을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사회주의나 그 유사한 복지주

의 따위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정부 역할의 최대한 축소를 주장하며 자유방임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그 책에서 저자들은 “자유시장에서 사기업을 통한 경제활동만이 자유를 가져온다”면서 가격, 임금, 교육, 빈곤 퇴치, 차별 철폐 등 모든 사회문제를 자유시장의 사기업에 맡기면 해결되며 정부는 사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에 거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립학교나 노동보호나 사회보장이나 모두 자유시장에 어긋나는 것으로 없어져야 하고 모든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사립학교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보장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제도란 높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청년에게 불리하고 노인에게 유리한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보호라는 악”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복지제도란 가족을 해체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할 동기를 떨어뜨리며, 자본의 축적을 감소시켜 결국 자유를 제한하므로 모든 사회복지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가 나눠진다면 자유는 줄어든다고 믿는 프리드먼 부부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자유는 파괴된다”고 말한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프리드먼 부부의 자유는 적어도 한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의 체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동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어 제127조까지 그러한 규제와 조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2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데, 이는 프리드먼 부부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이나 교육법은 20세기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에서 헌법에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프리드먼을 맹종한다면 헌법을 수호한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헌법 제2장의 기본인 평등에 대해서도 프리드먼은 부정적이다. 즉 결과적 평등을 얻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하면서 평등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대통령의 평등에 대한 불신은 2021년 12월 22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미팅에서 한 발언에서 드러났다. 즉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 말로 인해 "일종의 선민의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식의 비판을 했으나 그것이 평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것임은 지적되지 않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2022년 3월 7일, 대선을 앞두고 출판협회에서 요청한 '인생 책' 세 권에도 포함되었고, 특히 그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제일 우선으로 추천"했다. 동시에 추천한 밀의 『자유론(On Liberty)』은 "자신의 법대 진학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된 책"이라고 설명했고, 최근에 읽은 책으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를 꼽으며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라는 책의 논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책에 비해 다른 두 권은 세 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33차례, 9월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21차례 자유를 외쳤다. 특히 세계 정상들을 향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자"며 '자유'를 무려 21번이나 외쳤다. 당시 "현 정부가 '자유'라는 단어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언론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젠 표현의 자유는 뒷전"이라고 꼬집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자유였음이 이미 검찰총장 후보 답변서에서부터 드러났다.

3. 〈자유론〉의 자유

나는 이 글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차원의 논의를 벌일 생각은 없다. 그런 일반적인 논의는 이미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행해져 왔으니 독자들은 그런 책들을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읽고 법대에 가도록 결심하게 했다는 책인 『자유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은 프리드먼 등의 자유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대통령의 자유시장주의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그 책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잘못 읽었다고 해서 지금 고쳐질 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책을 자기 생각의 근원인 양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이든'인지 뭔지 하는 식으로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지적이라도 해둘 필요가 있다.

법대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입학 때나 재학 중에 법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만 『자유론』을 읽어서라고 답한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서 대통령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은 저명한 법률가의 책이나 법률가 출신으로 정치인이 된 국내외 인물들의 전기를 읽거나 유명한 재판이나 억울한 옥살이 등의 기록을 읽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인데 『자유론』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으로 세 가지, 즉 의식의 내면적 영역(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각의 자유, 의견 표명과 언

론 출판의 자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단결의 자유를 요구한다. 밀의 법적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범세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고, 검열이나 동성애, 이혼 같은 분야의 법 개정을 촉구한 근본 지침이 되어왔다. 밀이 주장하는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자유'의 바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사상의 자유가 상식이 되게 할 것을 역설한 점에서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밀은 『자유론』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외의 저술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사회는 충분한 검토 끝에 공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이든 폐지하거나 변경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현재 상황에서 사회가 주는 직접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와 통한다. 나아가 그는 지구상의 원료를 공동 소유에 두고, 협동 노동으로 생기는 이익에 만인이 평등하게 참여야 한다고 하는 자유사회주의'(liberal socialism)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유는 사유를 말한다.

4. 대통령의 자유만능주의와 적대적 엄벌주의

앞에서 보았듯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시간의 규제도 불필요하다. 그런 사고가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는 주5일제로 월요일이 시

작되는 자정부터 금요일이 끝나는 자정까지 하루 24시간씩 5일을 하므로 불가능하다. 일주일을 일한다면 하루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현행 정규 노동은 주 40시간(주 5일제)이다. 120시간제는 그것이 무리한 것임을 알았는지 더는 주장되지 않았으나, 2022년 12월 12일,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향후 365일로 늘리면 주당 최대 69~8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2배나 늘리려는 이 시도는 노동법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노동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술수이다. 나를 포함한 노동법 교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30여년 노동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나는 한국 노동법학자나 노동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적이라는 점에 절망해왔는데, 그래도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어용 행세를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어용학자들이 가세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다음 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타협 불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배제를 선포했는데, 이는 노조가 반자유세력임을 선포한 것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인정한 결사(단결)의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주장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자유를 제거하려는 범죄'로 낙인찍은 것이다. 이미 그 앞에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업무개시명령으로 분쇄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뒤 노동조합 부패를 한국의 3대 부패라며 노조운동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이는 노조 비리를 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소위 '귀족노조'가 노동 약자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업 규모, 원-하청 관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

조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는 수익 중심 경영을 해온 데 기인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귀족노조'의 '착취 범죄' 탓으로 본다. 그래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풀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하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그들의 파업권을 부정하면서 '때려잡았다'.

한국의 주류 법학자나 법조인들에게는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상을 받으며 지난 반세기를 살아왔다. 조중동에 앞장서는 헌법학자들을 위시한 법학자나 법률가들은 헌법의 사회권 규정을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전통이 제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 수준이 세계 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마저 사법시험 필수과목이 아니므로, 혹은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것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배운다고 해도 보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모든 판결이나 학설은 사유재산권 절대라는 원칙에 서서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어매어 합법적인 파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 놓고서 그것을 위배한 경우 수십억대의 엄청난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극좌 노동운동가 출신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라는 자가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법안 논의에 반대하면서 민법의 사유재산권을 들먹였다.

반면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의 끝을 모르는 재벌규제 완화가 진정한 자유로 구가되고 있다. 대통령은 '마음껏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자유로 오인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기업 정신에 지배당한 사람들은 소유의 자유만을 자유로 인식하고, 기업은 독재나 독점이 자유인 양 사람들의 인식을 호도한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자유의 관념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조작되어 결국 강한 자와 부유한 자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빼앗는 권리로 타락했다"고 말했듯, 한국사회에서도 '자유'란 결국 소수인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타락했다.

대통령이나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일반인의 눈을 현혹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기능의 축소라는 것인데, 그 축소된 기능에는 사회국가나 복지국가로서의 기능과 달리 경찰국가(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검찰국가)라는 기능은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대통령의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는 억압인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 이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서구 선진 사회에서 급부상한 감옥의 역할과 형벌 강경책으로의 전환에서도 나타나지만 최근 한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신엄벌주의를 분석한 『가난을 엄벌하다(Les Prisons de la Misere)』에서 로익 바캉은 그러한 신형벌주의는 경제, 사회 분야의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루어 죄와 벌 분야에까지 경제적 사고와 시장 효과, 개인의 책임 의무라는 도그마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바캉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가리켜 "경제국가 소멸! 사회복지국가 약화! 형벌국가 강화!"라고 이름 붙였다. 즉 경제 싸움터에서는 이미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되, 국가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벌 업무는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쇠퇴를 동반했고, 복지국가의 해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를 부른다. 계급·계층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시가 와해될 위기가 생기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찾은 것이 강경한 형벌 정책이다. 사회보장에서 철수한 국가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잘못을 도시 외곽 빈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정권 초기에 깡패나 부정부패자 때려잡기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깡패나 부정부패자에 한정되지 않고 야당이나 노조 심지어 시민단체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점이다.

5. 자유는 억압이 아니다

자유는 억압이 아니다. 자유는 억압의 반대다. 자유는 사유가 아니다. 자유를 사유로 왜곡함은 자연의 파괴만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파괴를 가져온다. 이는 우리를 비열한 경제적 동물로 타락시키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동물로 타락시키며 인간을 팔아먹는 짓까지 자행하게 한다. 지금도 일부 부자들은 사유에 대한 욕망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자유라는 미명의 사유라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란 말은 우익 이데올로기의 공격적 단어가 되었다. 한국의 보수가 신앙하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자유란 말이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liberalism'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도리어 반대되는 단어이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이나, 우리의 자유주의는 적대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와도 맥을 달리한다.

자유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특히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학문과 예술, 교육에서의 자유가 그렇다. 국가에 의한 자유의 침해 내지 제한으로부터 그 침해와 제한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시민혁명에 의해 가능했다. 어쩌면 한국은 아직도 시민혁명을 제대로 겪지 이루지 못한 나라인지 모른다. 현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심지어 헌법 수호라는 미명으로 그런 정신적 자유를 노골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 이것이 적대적 엄벌주의에 입각한 경찰국가다. 이는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도리어 그 최소한의 자주적 노력인 노동조합을 반기업이라는 이유에서 엄벌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헌법 인권 체계의 기본원리가 파괴

되고 있다. 반면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국가에 의한 약자의 자유보장이라는 사회권은 철저히 방치되면서 그 최소한의 자조적 노력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결사들은 반기업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탄압되는, 극단적인 자유의 혼란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자유란 우익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인민들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외쳤던 처절하고 당당한 현실의 요구였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자유, 프랑스혁명에서, 톈안먼 광장 시위에서도 절규했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우익의 적대적 이데올로기로 오용되는 자유, 소유만을 강조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인민의 자유는 고귀하고 간절한 것이다. 생명을 바칠 만한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자유였다. 역사는 자유를 일궈내려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민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든 자유는 영원한 미완성의 창조이며 끝나지 않는 싸움, 끝없는 투쟁, 쉬지 않는 창조다. 영구 혁명이자 영원한 변화를 뜻하는 자유가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오용되는 것은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 확대의 역사였다. 자유는 인류의 오랜 꿈이자 역사였고, 언제나 인류와 함께했다. 자유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것이며 이기적 욕망이나 자의적 방종은 결코 자유가 될 수 없다. 소유나 사유의 자유만을 자유라 하는 재벌이나 독재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고 영원한 변화와 영구한 혁명에 동참해야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 그것이 지난 '촛불'에 의해 가능했으나, 그 '촛불'은 실패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촛불'이 다시 필요하다.